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4. (목) 조간 2022. 8. 3. (수) 11:00	배포 일시	2022. 8. 2. (화)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정규삼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장기봉 (044-200-5773)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 「항만안전특별법」 8.4(목)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4일(목)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법 시행을 위해 8월 2일(화)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 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선주와 화주에게 부과하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사업장 내 안전 투자에만 활용할 수 있는 항만안전관리비(톤당 35원, TEU당 237원)를 추가

** 2022년 기준 전국 58개 항만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 원 지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며, “앞으로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특별법 제9조제1항)
 - 하역사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지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하역사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
 -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구성(특별법 제7조)
 - 하역사업자·항만근로자 단체와 항만당국(지방해수청, 항만공사),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노·사·정 항만 안전협의체 구성, 주기적인 합동 점검 실시
 - 항만안전점검관 도입(특별법 제9조제5항)
 -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이행여부 상시 점검 및 시정조치 추진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특별법 제8조)
 -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필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특별법 제3조)
 - 하역사 등 기업의 재해예방시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 안전설비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추진
- * 국비 50%(항만공사 관리항만은 국고 25%, 항만공사 25%), 하역사 50%